

가족 단위 극단선택 비극 반복...생존한 부모 어떤 처벌 받았나

자녀 살해·미수 판결 최근 2년간 29건 피해 자녀 수 36명...부모에 저항 못해 법원 “극단 아동학대” 지적...실형 선고 다른 자녀 양육 등 사정 고려해 집유도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한 부모가 이를 실행하기에 앞서 자녀를 살해하는 '자녀 살해 후 극단선택' 사건이 최근 잇따라 발생했다. 법원은 살아남은 부모들에게 대체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별 가족의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 등 선처를 한 경우도 드물게 있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지난 달까지 판결이 확정된 살인, 살인미수 사건 중 부모에 의해 자녀가 피해를 입은 사례는 총 29건(동일 사건 1·2심은 1건으로 집계)으로 파악됐다. 부모 손에 죽거나 다친 자녀들은 36명으로 평균 연령은 8.4세였다.

◆독단으로 극단선택 결심...저항 어렵게 만들어 범행

지난 6월 완도, 지난달 세종, 의정부에서 일가족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모두 부모가 생활고·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뒤 벌어졌다.

이처럼 일가족이 전부 사망한 경우 외에도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미수' 혹은 '자녀 살해 미수'로 최근 2년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모들은 29명에 달한다.

피해 자녀 36명의 연령대는 영유아, 어린이에서 중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세부적으로는 미취학 아동(0세~5세)이 15명, 학령기 아동(6세~11세)이 14명, 청소년(12세~18세)이 3명, 성인(19세 이상)이 4명이었다.

부모들은 대부분 어린 자녀들이 저항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2020년 10월 수원고법에서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

고받은 A씨는 배우자와 함께 극단 선택을 결심한 뒤 6살, 10살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벌레 잡는 약'이라고 속여 먹인 뒤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B씨는 배우자가 잠든 사이 발달장애를 가진 9살 자녀를 차에 태우고 나와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체격과 의사표현 능력이 발달한 청소년·성인 자녀들도 부모의 범행을 피할 수 없었다. 지난해 7월 광주고법에서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C씨는 15살 자녀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몸에 좋은 것'이라며 먹였으나 자녀가 잠들지 않고 저항하자 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극단적 아동학대' 지적하면서도...엄벌·선처 공존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자녀를 죽이거나 다치게 한 부모들에게 일관되게 '부모는 어떤 이유로도 독립한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범죄 사실에 아동학대 혐의가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범죄를 '극단적 아동학대'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지난해 7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생후 3주 된 자녀와 함께 투신해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극히 중대한 범죄인 동시에 극단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살인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3년부터 무기징역 이상까지 실형으로 구성돼 있다. 양형기준을 벗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형법 제53조에 따른 '자랑감경', 즉 판사의 재량 행사가 필요하다.

살인미수죄도 마찬가지로 양형기준 자체는 실형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영역 선고형의 하한은 징역 1년이다. 양형기준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는 중지미수, 처벌불원 등 긍정적 참작 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된다.

법원은 살인·살인미수죄가 중대 범죄임을 들어 각각 징역 3~25년, 징역 2년6개월~4년에 이르는 엄벌에 처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선처를 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실제 29건의 판결 가운데 살인 혐의로 기소된 19건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지난 6월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에서 실종된 조유나(10)양의 일가족이 탔던 차량이 인양되고 있다.

은 4건(약 21%),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10건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은 6건(60%)이었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주로 고려한 것은 남은 가족의 상황, (미수일 경우) 피해 자녀의 신체·정신적 상태였다.

지난해 4월 창원지법은 발달장애를 가진 21세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E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지병을 앓는 다른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사정을 참작했다. 당시 재판부는 "투병 중인 자녀를 돌보게 함으로써 피해 자녀에게 못다 준 사랑을 배풀 수 있게 하는 것이 응보, 특별예방 등 모든 관점에서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앞선 B씨의 경우, 법원은 피해 자녀가 평소 B씨와의 유대관계가 좋았으며 범행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B씨를 부모로서 계속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복되는 비극... “생활고·스트레스·돌봄부담에”

자녀살해, 경제·정신적 곤란 주된 이유

극단적인 선택 과정에서 자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는 '자녀 살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극단적 아동학대 범죄'라는 지탄이 나온다. 법원은 살아남은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2일 뉴시스가 대법원 판결 인터넷 열람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판결문 29건에 따르면 자녀를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쳐 유죄 판결을 받은 부모들은 대체로 경제적·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원인...“극심한 생활고에 월세도 못내”

A씨는 지난 2013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뒤 자녀 두 명을 낳아 키우고 있었다. 그러다 2018년경부터 경제적 문제로 배우자와 갈등을 빚다 별거를 선택했고, A씨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했다.

A씨는 월세마저 제대로 내지 못해 살던 곳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 여기에 양육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자녀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자녀들에게 여행을 가자고 한 다음 투숙한 숙소에서 자녀들을 살해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A씨는 여행지 호텔에서 첫째(당시 7세)에게는 'TV를 보고 있으라'고 한 뒤 둘째(당시 5세)를 '숨바꼭질을 하자'며 방으로 유인했다. A씨는 둘째를 흉기로 찌른 뒤 자해를 시도했으나 첫째가 데리고 온 호텔 관리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1심 수원지법은 "우리 사회는 그동안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에 관하여 '부모가 오죽했으면'이라는 온정적인 시각으로 '동반자살'로 미화해 왔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수원고법은 "피해아동은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두려워할 정도로 정서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악화...“신변비관”

B씨는 직장생활 중 받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지난 2020년 우울증·공황장애 등을 진단받고 정신과에서 약물치료를 받았다.

B씨는 지난해 2월에 새로 처방받은 약이 몸에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했고, 수면장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B씨는 자신이 죽으면 어린 자녀가 부모 없이 혼자 살아가기 힘들겠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B씨는 집에서 컴퓨터를 하던 자녀(당시 11세)를 질식사시켜 살해하려 했으나 자녀가 도망쳤고, B씨가 다시 자녀를 흉기로 찔렀으나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채 미수에 그쳤다.

청주지법 제2지원에 "피해자와 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극도로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보다는 적절한 치료와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이 절실히 보인다"며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애·투병 자녀 돌봄 부담...비극의 단초되기도

C씨는 직장생활을 하던 중 1997년 자녀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뒤로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 돌봄에 전념해 왔다.

C씨는 자녀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며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게 했으나, 자녀는 약을 거부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병세가 갈수록 악화됐다. 입원중인 병원에서 문제를 일으켜 퇴원을 권유받아 여러 의료시설을 전전하기까지 했다.

이에 C씨는 자녀를 더이상 돌보기 어렵겠다는 생각에 이르렀고, 2020년 5월 배우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잠을 자고 있던 자녀(당시 36세)를 얼마 간 바라본 뒤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C씨는 1심 법정에서 "같이 죽기 전에 딸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마음도 정리하기 위해 딸이 자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진술했다.

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이 아무리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펴 왔다 하더라도 자

녀의 생명에 관해 함부로 결정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배우자가 그간 감내해 왔던 어려움을 감안해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며 C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C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서울고법은 C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 “부모들 인식 문제 있지만...사회구조적 문제도”

법원은 자녀 살해 범죄가 '부모의 위기'를 '자녀의 위기'로 동치시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됨을 일관되게 짚고 있다.

A씨 사건의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부모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과 자신이 죽은 후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 단정하고 책임진다는 잘못된 판단만으로 자녀를 살해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침했다. 다만 사회구조적 원인이 있다는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판결도 있었다.

C씨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C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면서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서는 사회공동체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사회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받지 못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은 온전히 피고인의 가정에 전가돼 피고인 개인의 부담이 됐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213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기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2기립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게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활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